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참 고 자 료**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 9. 21(금)	담당부서	산업기술정책과
담당과장	김대자 과장(044-203-4510)	담 당 자	김종락 사무관(044-203-4515)

「산업융합촉진법」 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

- 규제 제한없이 새로운 제품·서비스 실증 및 시장출시 가능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**9월 20일,** 규제샌드박스 제도* 도입을 위한 **『산업융합촉진법』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**했다고 밝혔다.

> * (**규제샌드박스 제도**) 신산업 분야 **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**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**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**시켜주는 제도
>
> -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○ 이번 법 개정을 통해 **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** 우리기업들의 **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**하게 되어, 향후 **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이 가속화**될 전망이다.

□ **「산업융합촉진법」 개정안의 주요내용**은 **새로운 융합 제품·서비스가**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, ①**규제 신속확인,** ②**실증을 위한 규제특례**(이하 '실증특례'), ③**임시허가**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.

① **(규제 신속확인)** 기업들이 개발한 **새로운 제품·서비스**에 대하여 **허가 등의 필요 여부** 및 **허가의 기준·요건** 등을 신속(30일 이내)하게 확인해주는 제도

규제 신속확인 예시

○ **(현행)** 국내 요식업계 등은 배달로봇을 개발 중

○ **(문제점)** 배달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도로 또는 인도 중 어디로 통행해야 하는지 현존 규제 확인이 필요

☞ **(규제 신속확인)**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을 개발한 사업자는 **배달로봇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통행이 가능한지** 여부 및 인허가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,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**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**해 줌



(해외) 배달로봇



(국내) 배달로봇

② **(실증특례)** 새로운 제품·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**시험·검증**하기 위하여 제한된 **구역·기간·규모 안에서** 각종 **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** 해주는 제도

* 실증특례 기간은 **최대 2년**이며, **1회 연장** 가능

실증특례 예시

○ **(현행)** 자율주행 레벨4 수준으로 무인 미니버스가 개발

○ **(문제점)** 실증 테스트가 필요한 무인버스가 **기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**되는 상황

☞ **(실증특례) 자율주행 버스**(레벨 4수준)를 개발한 사업자는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, 산업부에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*를 거쳐 일정한 **구역·기간·규모 안에서** 실증특례를 부여

* 규제특례심의위원회(산업부 장관 위원장) : 관계부처 차관급, 민간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, 민관합동으로 규제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 심의·조정



<핀란드에서 실증중인 무인셔틀>


<일본에서 실증중인 무인셔틀>

③ (임시허가) 새로운 제품·서비스에 대해 허가 기준 등이 없는 경우, **조기에 시장에 출시** 할 수 있도록 **임시로 허가를 해주는 제도**

* 임시허가 기간은 **최대 2년**이며, **1회 연장**가능(허가기준 마련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)

임시허가 예시

○ **(현행)** 트럭 상부에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차량 개발 완료

○ **(문제점)**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 부재

☞ **(임시허가)** 새로운 구조나 기능이 추가된 건설기계를 개발한 사업자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, 산업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시로 허가함



< 기존제품 >


< 신규제품 >

□ 상기 예시들은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사례이며, 실제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할 것인지 규제특례심의회위원회(관계부처 및 전문가) 심의가 필요하다.

○ 규제 신속확인, 실증특례, 임시허가는 반드시 순서대로 신청해야하는 것이 아니라, 사업자(기업, 대학, 연구소 등)의 필요에 따라 신청*이 가능하다.

* 사업자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출시하기 위해 바로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고, 또는 제한된 지역에서 실증특례(테스트, 2년 이내)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,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음

□ 또한,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, 사업자가 고의·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하였다.

*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·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안 제10조의3 제8항, 제10조의5 제11항)

□ 이번에 국회 통과한 「**산업융합촉진법**」 **개정안**은 **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**된다.

□ 산업부는 **대한상공회의소, 한국중견기업연합회,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조**하여, **우리 기업을 대상으로** 새로운 제품·서비스를 실증(테스트)하거나, 임시허가를 통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**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**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김종락 사무관(☎ 044-203-451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**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요약**

□ 추진 배경

○ A ICBM 등을 활용, 기존 법·제도를 뛰어넘는 **新제품·서비스** 창출

→ **규제샌드박스 도입**으로 **신제품·서비스의 시장출시 가속화** 필요

□ 주요 내용

○ **❶규제 신속확인, ❷실증을 위한 규제특례, ❸임시허가** 제도 신설

<table>
<tr><td>구분</td><td>실증·테스트 목적
(구역·기간·규모 등 제한)</td><td>시장출시 목적
(구역·규모 제한 정도 낮거나 없음)</td></tr>
<tr><td>규제 모호</td><td colspan="2">① 규제 신속확인 제도
○ 허가 필요여부,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
○ 사업자 신청 → 산업부 장관 → 관계부처 30일 내 회신</td></tr>
<tr><td>법령 공백
·
적용 부적합</td><td>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
○ 안전성 등을 시험·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 배제
(2년이내, 1회 연장가능)
○ 사업자 → 산업부 장관 → 규제특례심의위원회(민관합동) 결정</td><td>③ 임시허가
○ 시장출시를 위해 2년 이내 임시허가 부여(1회 연장, 법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간주)
○ 사업자 → 산업부 장관 → 규제특례심의위원회(민관합동) 결정</td></tr>
<tr><td>금지·불허</td><td></td><td>관련법령 제·개정 필요</td></tr>
</table>

○ **규제특례심의위원회**(민관합동, 산업부 장관 위원장)에서 국민의 **생명·건강·안전·환경·지역균형발전 저해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·처리**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·임시허가 허용 여부를 심의

* 규제특례심의위원회 : 관계부처 차관급, 민간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, 민관합동으로 규제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 심의·조정

○ 사업자는 규제특례 등으로 인한 **손해배상**을 위해 **책임보험** 의무가입, 관계부처는 필요시 즉시 **관련법령 정비에 착수**

□ 기타 사항

○ 업역분쟁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신설, 융합옴부즈만 기능 강화

참고 2 **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주요내용**

1 융합 신산업 창출 지원

< 규제 신속확인 제도 >

◇ **(정의)** 새로운 융합 제품·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·요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

□ **(규제 신속확인)** 사업자 등이 융합 신제품·서비스에 대한 **규제 존재, 허가 필요여부 등을 산업부 장관에게 확인 요청**(안 제10조의2)

< 규제 신속확인 절차 >

① 신제품·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이 필요한지 확인 신청(사업자 → 산업부 장관)
② 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(이하 "관계 행정기관")에 통보
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 허가 필요여부를 산업부에 통보

<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>

◇ **(정의)** 새로운 융합 제품·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·검증하기 위하여 제한된 구역·기간·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

□ **(규제특례 신청)** 사업자 등이 **산업부 장관**에게 실증을 위한 **규제특례를 신청·추진**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(안 제10조의3)

① 새로운 융합 제품·서비스에 대한 허가 **기준·규격·요건이 법령에 없는 경우**, 旣 존재하는 기준·요건 **적용이 곤란한 경우**

② 다른 법령에 의해 **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**한 새로운 제품·서비스에 대해 **제한된 구역·기간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**

< 규제특례 신청절차 >

① 시범사업 신청(사업자 → 산업부 장관)
② 산업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, 규제특례심의위원회(민관합동)에 상정
③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 여부 및 범위(구역·기간·규모) 심의·조정
④ 산업부장관이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특례 부여

□ **(특례 결정) 규제특례심의위원회**(민관합동)에서 해당 신제품·서비스의 **혁신성·안전성, 시험·검증 필요성** 등을 고려하여 특례 여부 의결

* 규제특례심의위원회(산업부 장관 위원장) :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,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, 민관합동으로 규제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 심의·의결

○ 국민의 **생명·건강·안전·환경 및 개인정보의 보호, 지역균형발전**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(안 제10조의3 6항)

○ 규제특례 기간은 **2년 이내**에서 정함(1회 연장 가능),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**조건을 붙일 수 있음**

□ **(손해배상)** 실증특례를 받은 융합 신제품·서비스로 인한 **안전사고** 및 **피해**를 보상하기 위해 **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**(안 제10조의3 2항)

* 단,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, 산업부장관과 별도 협의하여 배상방안 마련

○ 규제특례심의회에서 **손해발생 가능성** 및 **손해배상 방안**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**규제특례 여부 심의**(안 제10조의3 6항)

○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융합 신제품·서비스로 인하여 인적·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음. 단, 사업자가 고의·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책임면제

□ **(규제 개선)** 관계 행정기관은 규제특례 결과를 통해 법령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, 조속히 **법령 개정에 착수**해야 함

○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(안 제10조의4 5항)

< 임시허가 신설 >

◇ **(정의)**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(2년 이내)로 허가(1회 연장 가능)를 부여하는 제도

* 실증 특례(시험·검증 목적) ↔ 임시허가(시장출시 목적)

□ **(임시허가 신청)** 사업자 등이 **산업부 장관**에게 융합 신제품·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(안 제10조의5 1항)

○ 새로운 융합 제품·서비스에 대한 허가 **기준·규격·요건이 법령에 없는 경우,** 旣 존재하는 기준·요건 **적용이 곤란한 경우**

< 임시허가 신청절차 >

① 임시허가 신청(사업자 → 산업부 장관)
② 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, 규제특례심의위원회(민관합동)에 상정
③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 여부 심의·조정
④ 산업부장관이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허가

□ **(임시허가 결정) 규제특례심의위원회**(민관합동)에서 해당 신제품·서비스의 **혁신성·안전성** 등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 의결

○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**조건을 붙이거나 시험·검사를 요구**할 수 있음(안 제10조의5 6항)

○ 임시허가 **기간은 2년 이내**로 하되, **1회 연장* 가능**(안 제10조의5 9항)

*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

□ **(손해배상)** 임시허가 받은 융합 신제품·서비스로 인한 **안전사고** 및 **피해**를 보상하기 위해 **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**(안 제10조의5 2항)

* 단,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, 산업부장관과 별도 협의하여 배상방안 마련

○ 규제특례심의회에서 **손해발생 가능성** 및 **손해배상 방안**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**임시허가 여부 심의**(안 제10조의5 6항)

○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융합 신제품・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・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음. 단, 사업자가 고의・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책임면제

□ **(규제 개선)** 소관기관은 임시허가 받은 융합 신제품·서비스에 대한 **근거 법령을 조속히 정비**하여야 함(안 제10조의5 12항)

○ 허가 근거가 마련된 경우 임시허가 받은 사업자는 즉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(안 제10조의5 13항)

2 규제특례심의위원회

◇ **(정의)** 새로운 융합 제품·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위원회

□ **(구성)** 위원장(산업부 장관) 포함 **25명 이내**(안 제8조의2 2항)

○ 관계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여 **부처 간 협의・조정**

○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해 **민・관 합동**으로 의사결정

□ **(역할)** 실증을 위한 **규제특례・임시허가 여부 및 기간** 등을 결정

○ 융합 신제품・서비스의 혁신성·안전성 등을 근거로 판단하되, 필요시 조건을 붙일 수 있음

○ 특히, 임시허가의 경우 시장출시를 허용하는 바,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**시험・검사**(제품 안전성, 내구성 등)를 받도록 할 수 있음

3 갈등조정위원회 신설

◇ **(정의)** 새로운 융합 제품·서비스의 등장으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, 이를 예방·조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(민간 전문가 중심)

□ **(구성)** 새로운 융합 제품·서비스의 등장으로 기존사업자 등과 **갈등이 발생**하는 경우, 이를 **예방 및 조정**하기 위하여 설치

○ **민간 전문가**를 중심으로 **각 사안별로**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(안 제8조의3 3항)

□ **(역할) 업역 갈등 해소방안**을 연구·논의하고, 논의 결과를 **관계행정기관**에 전달하고 **정책반영을 요청**

4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기능 강화

□ **(권한 강화)** 규제 개선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**'협조 요청'**에서 **'개선 권고(勸告)'로 옴부즈만의 권한을 강화**

*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, 사유 없이 불이행 시 그 내용을 공표 할 수 있도록 함

□ **(행정지원 등) 옴부즈만 지원단 신설,** 행정적·재정적 지원근거 마련

* 국공립연구기관, 출연연구기관,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